

초음파 검사료 지급기준

① 초음파 검사는 입원기간에 5회 이내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, 직무상 요양기간 (기간연장 포함) 중 총 10회 이내에서 인정한다.

※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42조(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의 준용 제22조제2항 및 제23조)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2회 이내 인정 (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7조의2 적용. 2016.3.1. 시행)

② 도플러 검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며, 1회 검사 시마다 300,000원 이내에서 지급한다.